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2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2월 26일

발 의 자: 박수빈, 강동길, 김기덕,
김성준, 김태수, 박강산,
박승진, 봉양순, 서호연,
송도호, 송재혁, 왕정순,
유정희, 이민옥, 이상훈,
이소라, 이승미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이은림,
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
최재란, 한 신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,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, 지방재정법 , 지방세기본법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“100분의 22.6”을 “100분의 2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조정교부금의 재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분의 22.6</u>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조정교부금의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24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4조(조정교부금의 재원)제2항	○	재원 비율변경(100분의 22.6→24)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발생 ⇒ 총 1,321,051,760천원 소요(연평균 264,210,352천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조정교부금 추가 지급비용(안 제4조제2항)

나. 전제

- (교 부 금) 2025년 보통세 기준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(매년 동일 전제¹⁾)
⇒ 2025년 기준 추가 발생(제정기준선 외 추가소요액)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추계
- (발생기간)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
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2025년 서울시 행정국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1,321,051,760천원(연평균 264,210,352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조정교부금 추가재정소요액 (안 제4조제2항)	264,210,352	264,210,352	264,210,352	264,210,352	264,210,352	1,321,051,760
	소계(a)						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264,210,352	264,210,352	264,210,352	264,210,352	264,210,352	1,321,051,760

주 : 2025년도 서울시 행정국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추계

1)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를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하므로 매년 보통세 징수액에 따라 달라지나, 현재로서는 정확한 징수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매년 동일함을 전제로 추계하였음
⇒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본예산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,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나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
※ 2022년 본예산 기준 3,812,308,120천원 / 2023년 본예산 기준 4,167,858,240천원 / 2024년 본예산 기준 4,171,745,184천원

4. 덧붙이는 의견 : 조정교부금 산정구조 특성상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비용²⁾의 경우, 당해 징수되는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 희 선
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 추계분석관 손 제 승
 ☎ 02-2180-7954
 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조정교부금 추가 지급비용(안 제4조제2항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1,321,051,760천원(연평균 264,210,352천원)

$$- 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조정교부금 연평균 추가제정소요액})_i$$

$i = \text{비용추계 연차}(2025\text{년} \sim 2029\text{년})$

나. 연평균 비용 = 264,210,352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현행(22.6%)	본 개정안(24%)	증가액
보통세	당해연도분 ³⁾	4,229,570,338	4,491,579,120	262,008,782
	지난년도분 ⁴⁾	35,539,630	37,741,200	2,201,570
	소계	4,265,109,968	4,529,320,320	264,210,352
레저세분 ⁵⁾		19,959,662	19,959,662	-
지역자원시설세분 ⁶⁾		3,054,120	3,054,120	-
합 계		4,288,123,750	4,552,334,102	264,210,352

주 : 2025년 본예산 기준

- 2)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산출하려 하였으나 정합성 오류가능성이 높아 매년 동일을 가정함
- 3) 2025년도 서울시 보통세 당해연도 예상액 18,714,913,000천원을 기준으로 교부율(현행 및 개정안)을 곱하여 산출
- 4) 2025년도 서울시 보통세 지난년도 예상액 157,255,000천원을 기준으로 교부율(현행 및 개정안)을 곱하여 산출
- 5) 99,798,310천원 × 20%

지방재정법

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④ 시·도지사는 「지방세법」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(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)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(이하 “승자투표권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시·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- 6) 4,926,000천원 × 62%
 ⇒ '24. 4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(징수교부금 제외 시 62%) 교부 신설